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조직) ①본 교육원에는 평생교육부와 체육지도자연수부를 둔다.</p> <p>②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되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본 교육원에 각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전공 관련 교수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p> <p>④평생교육부는 학위과정 및 학점인정 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체육 프로그램 2. 교양 및 취미 교육 프로그램 3. 성인건강 교육 프로그램 4. 자격취득 교육 프로그램 5. 위탁교육 프로그램 6. 스포츠클럽 7. 국제 스포츠 연수 프로그램 8. 기타 지역사회 주민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p>⑤체육지도자연수부는 2급 경기지도자연수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p> <p>⑥삭제</p>	<p>제2조(조직) ① 교육원에는 평생교육부와 체육지도자연수부를 둔다.</p> <p>②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되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③본 교육원에 각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전공 관련 교수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p> <p>④평생교육부는 학위과정 및 학점인정 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체육 프로그램 2. 교양 및 취미 교육 프로그램 3. 성인건강 교육 프로그램 4. 자격취득 교육 프로그램 5. 위탁교육 프로그램 6. 스포츠클럽 7. 국제 스포츠 연수 프로그램 8. 기타 지역사회 주민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p>⑤ 체육지도자연수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지정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p> <p>⑥삭제</p>
<p>제7조(교육비) ①평생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육비) ①평생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안)
<p>②평생교육원의 학습비 반환은 “별표”와 같다.</p> <p>③체육지도자연수부의 교육 및 연수비에 관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지도자연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한다.</p> <p>④ <신설></p>	<p>②평생교육원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른다.</p> <p>③체육지도자연수부의 교육 및 연수비에 관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연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한다.</p> <p>④평생교육원 학습비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 대상 및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2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평생교육부 회계는 한국체육대학교 기성회계로 한다.</p> <p>②평생교육부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한다.</p> <p>③원장은 매년 12월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지도자연수부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연수 업무지침에 의거 정한다.</p> <p>④삭제</p> <p>⑤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기성회계로 하며, 분임계약관 및 분임출납관을 둘 수 있다.</p>	<p>제12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평생교육부 회계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로 한다.</p> <p>②원 장은 매년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 2월 말 의거 정한다.</p> <p>③원장은 매년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지도자연수부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연수 업무지침에 의거 정한다.</p> <p>④삭제</p> <p>⑤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 대학회계로 하며, 분임계약관 및 분임출납 관을 둘 수 있다.</p>
	<p>부 칙(제 호, 2015. 00. 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부터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안)																															
<p><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프로그램 환불기준</th> <th style="width: 50%;">반환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수강기간 1/3 경과전</td> <td>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td> </tr> <tr> <td>수강기간 1/3 경과후 수강기간 1/2 경과전</td> <td>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td> </tr> <tr> <td>수강기간 1/2경과후</td> <td>반환하지 아니함</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 환불기준	반환금액	수강기간 1/3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강기간 1/3 경과후 수강기간 1/2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수강기간 1/2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p><별표>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55%;">반환사유 발생일</th> <th style="width: 30%;">반환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td> <td>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td> <td>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td> </tr> <tr> <td rowspan="4">가. 학습비 징수기간</td> <td>수업시작 전</td> <td>이미 낸 학습비 전액</td> </tr> <tr> <td>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td> <td>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td> </tr> <tr> <td>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td> <td>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td> </tr> <tr> <td>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td> <td>반환하지 아니함</td> </tr> <tr> <td rowspan="2">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td> <td>수업시작 전</td> <td>이미 낸 학습비 전액</td> </tr> <tr> <td>나. 학습비 징수기간 수업시작 후</td> <td>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td> </tr> <tr> <td>비고</td> <td colspan="2">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나. 학습비 징수기간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프로그램 환불기준	반환금액																															
수강기간 1/3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수강기간 1/3 경과후 수강기간 1/2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수강기간 1/2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나. 학습비 징수기간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